

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



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

→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냉방장치 실내·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

→ 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휴식 주기적으로 쉬기

→ 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

→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119 신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

→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그 외 예방조치

→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(섶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휴식시간 추가 배정 등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, 폭염작업 시간 단축
* 신규배치자,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, 고령자 등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휴게시설 설치·관리기준 점검표



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

→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여부

☐ 설치 ☐ 미설치



크기 최소 바닥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

→ 최소 바닥면적 6㎡ 이상,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2.1m 이상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였는지 여부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위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

→ 휴식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설치

*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게시간의 20% 넘지 않는 곳에 위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화재폭발, 유해물질, 분진 및 소음 노출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온도·습도·조명·환기 적정 기준 준수

→ 적정 온도(18~28도)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적정 습도(50~55%)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적정 조도(100~200럭스)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설치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비품 구비 및 관리

→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구비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→ 관리 담당자 지정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



목적 외 사용금지

→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

☐ 적정 ☐ 개선 필요